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1. 제 출 자 : 김범기 의원외 7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개정(2009. 4. 1, 법률 제9594호)과 건축법시행령 개정(2009. 8. 7, 대통령령 제21668호)으로 법률조문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인원 증원 및 법률조문을 명확히 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건축위원회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위원회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건축 관련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함.(안 제4조)
- 건축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로 명칭 변경 (안 제3장)
-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119조의2를 영 제119조의3으로 변경 (안 제17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인원 증원 및 관련조문의 개정과 조정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